5.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O 발의일자 : 2020년 11월 19일
- O 발 의 자 : 홍인표 의원, 강성환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배지숙 의원, 안경은 의원, 이진련 의원, 임태상 의원
- O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0일
- 상정일자: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2020년 12월 16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홍인표 의원)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부모의 이혼, 별거, 질병 및 사망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빈곤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를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O "아동빈곤", "빈곤아동" 등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O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O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
- O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O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를 규정(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전문위원 김창업)

□ 주요 검토사항

- O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빈곤", "빈곤아동" 등의 용어를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책 수립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O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 O 안 제5조는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O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연구,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O 안 제7조는 빈곤아동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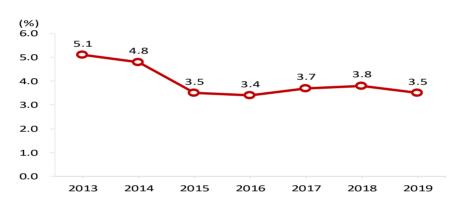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번 호	제 목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빈곤아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정의	"아동", "아동빈곤", "빈곤아동"등 용어 정의
제3조	책무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본 조례에 따름
제5조	시행계획의 수랍시행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6조	사업추진 등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를 규정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빈곤아동이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O 최근 부모의 가출, 이혼, 별거 등으로 해체되는 가족이 꾸준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교육·문화적 소외 등으로 빈곤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단위 : 천건,%,건]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이혼건수(천건)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	108.7	110.8
증감건수(천건)	-7.1	-2.6	0	1	0.2	-6.4	-1.8	-1.3	2.7	2.1
증감율(%)	-5.8	-2.2	0	0.9	0.2	-5.5	-1.7	-1.2	2.5	2
조이혼율 (인구 1천명당 건)	2.3	2.3	2.3	2.3	2.3	2.1	2.1	2.1	2.1	2.2

* 출처 : 통계청 「2019년 혼인.이혼통계」(2020.3.19.)

- O 대구시의 경우 빈곤아동이 '20년 9월 기준 35,849명으로 18세미만 전체 아동의 10.1%에 이르는 실정으로, 빈곤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개발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 대구시 빈곤아동 현황 [참고자료2]
- O 대구시의 경우 2020년 예산에서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에 1,828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 대구시 아동빈곤 예방 지원 시책 현황 [참고자료1]
- O 다만, 한부모 가정이나 결손 가정의 아동 등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 O 빈곤아동들이 교육·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O 또한 기존에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아동빈곤 예방 정책결정에 대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보완 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아동빈곤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청 과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